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6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김태년・황정아・이기헌

조 국・최기상・정성호

임광현 · 조계원 · 정준호

권칠승 · 이학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「담배사업법」 상담배,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 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).

법률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제6호나목 중 "다른 부분"을 "다른 부분 및 니코틴"으로, "제조한 것"을 "제조한 것."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(생	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	②		
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			
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삭 제			
6. 담배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6		
를 말한다)에 대한 종류별 세			
율은 별표와 같다.	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
나.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	나		
연초(煙草)의 잎이 아닌 <u>다</u>	<u>다른</u>		
<u>른 부분</u> 을 원료의 전부 또	<u> 부분 및 니코틴</u>		
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			
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			
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			
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	<u>제조한 것.</u> <u>다만,</u>		
<단서 신설>	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		
	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		
	<u>외한다.</u>		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		